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8. 4. 24 ————— 이海수의원외6인

나. 회부일자 : 1998. 4. 24

다. 상정일자 : 제65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98.5.4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이상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현행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식이 복잡하고, 신분증 전면의 사진 규격과 기재내용 등 제식의 도안을 새로 규정하여 활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신분증 전면 우측상단의 첨부사진 규격(현행 3.0cm×2.5cm → 5cm×4cm)을 확대하여 전면 중앙에 배치도록하여 인물 확인을 용이토록 하고
- 전면의 기재 내용과 제식이 복잡하여 일부내용을 후면에 이가하여 전면 제식을 간소화하고 후면에 의회마크를 도안토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사하구의회 신분증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신분증 용지 색상을 노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변경하고, 후면에 우리구 의회마크를 도안하여 개성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

- 신분증 전면에 치우친 기재 내용을 앞, 뒤면으로 재배치하고 인물 사진을 확대하여 중앙에 배치도록하여 인물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식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답변요지

- 신분증 뒷면 의회마크 도안 부분과 그외 바탕부분 기재내용의 글자색 부조화 우려
 - ▷ 의회 마크는 윤곽부분에만 색상삽입으로 바탕면과의 색상 차이가 크게 없음.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